전주덕진초등학교 학교규칙

개 정 1999. 03. 03. 규정 제1호 개 정 2002. 12. 23. 규정 제2호 개 정 2005. 03. 03. 규정 제3호 개 정 2011. 04. 07. 규정 제4호 개 정 2014. 03. 14. 규정 제5호 개 정 2019. 12. 13. 규정 제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전주덕진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61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학년 및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하계휴가 :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 3. 동계휴가 :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 4. 학년말휴가 :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 5. 재량휴업일 :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 6. 개교기념일 : 10월 5일
 - 7.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휴업일
- ② 학교장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법정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시행한다.
-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행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하고,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한다.
- ⑥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일수는 학년개시일 전 학교교육계획(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후 확정 교육과정운영일수로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생수용) 본교는 학구 내 학령아동 전원과 조기입학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만5세 아동을 수용하다.

제8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 편제는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당 학생수로 하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정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유예자
- ②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자
- ③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 ④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 수업일수와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운영하고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연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수 있으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2조(평가) 수업 속에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삶과 연결된 의미있는 배움이 일어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성장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잔
- 5. 가족 및 친·인척 등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
- 6. 생리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에 의거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여 월1회, 학부모의 확인서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생리결석이 확인된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보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인정한 경우
- 제14조(장애학생의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①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특수교육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의 제한이나 배제, 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 ④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이 아닌 자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제5장 입학·재입학, 편입학, 전학, 취학의무의 면제, 수료 및 졸업

제15조(입학시기) ① 본교의 입학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본교의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이 안에서 수시로 할수 있다.

제16조(만5세 아동의 취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5조 제2항에 의하여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허용 : 본교의 학교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입학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학을 허용한다.(1년 조기 입학만 가능)

제17조(입학 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조기 입학자, 법령에 정한 자 등 학교장의 입학허가로써 결정된다.

제18조(편입학) ①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 한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

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④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⑤ 외국 유학중이거나 외국인 학교 재학, 또는 졸업 후 본교 전입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해당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 ⑥ 재외국민 도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 초로 전입학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만으로 입학 가능하다.
- 제19조(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20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 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여권 사본 등 면제, 유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 ⑤ 미인정 해외출국(보호자 없이 학생만 체류하거나 보호자를 동반하였을지라도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어학연수 등)시는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미인정결석처리하고 결석개시 3개월 후부터는 정원외 관리를 한다.
- ⑥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 6장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제21조 (취학학교의 변경)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목적) 이 지침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 10. 29.)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시행 방침)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 제25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 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 제26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초등학교장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 10. 29.)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① 학교장은 제21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 140이상인 자
 -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 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7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 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 1. 제23조 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제24조 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 ④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 ②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

여야 한다.

제7장 체험학습

제31조(체험학습의 운영) ① 학교장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을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공휴일, 방학, 재 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② 학교장은 학생의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개인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③ 도시 학교 사이에서도 연구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나 도시 지역의 학교와 농·어촌학교간의 자매결연을 맺어 단체 교환학습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④ 현장체험학습은 교과활동과 관련지어 현장체험학습 운영방침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운영 방안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험학습 운영을 통하여 학습흥미와 동기를 강화하고 학생 각자의 독특한 개성이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 ⑤ 이 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2조(학생의 학교생활)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 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 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33조 (학생자치활동)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다모

임)을 둔다.

제34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담당교사의 배 치,학생인권존중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학생인권존중 차원에서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활동하다.

제10장 학생표창 및 징계

제36조(종류) 본교 학생에 대한 표창은 표창 목적에 따라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시햇하다.

제37조(시기) 표창은 행사 활동의 결과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한다.

제38조(외부 표창) 특정 기관 및 특정 분야에 대한 공로로 외부 기관 및 단체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대하여 학교에서 본교 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징계)

①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기타

제40조(제·개정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하며,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학생의 발의(학생회를 통한 발의)
 - 2. 학부모의 발의
 - 3. 교원의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

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3조(시안 마련)

①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한다.

제44조(심의)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5조(공포 및 정보 공시)

-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 ② 학교구성원이 개정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46조(안내 및 연수·홍보)

①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7조 (시행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